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국제분쟁해결절차

(조정 및 중재규칙 포함)

2014년 6월 1일 규칙 개정 및 발효

icdr.org

목차

서설	6
국제조정	6
국제중재	7
국제신속절차	8
ICDR에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	9
국제조정규칙	11
1. 당사자들 간의 합의	11
2. 조정의 개시	11
3. 대리	12
4. 조정인의 선정	12
5. 조정인의 공정성 및 고지의무	12
6. 공석	13
7. 조정인의 임무와 책임	13
8. 당사자의 책임	14
9. 비공개	14
10. 비밀유지	15
11. 속기기록 금지	15
12. 조정의 종료	15
13. 책임 배제	16
14. 규칙의 해석 및 적용	16
15. 예치금	16

16. 경비.....	16
17. 조정비용	16
18. 조정언어	17
회의실 대여.....	17
국제중재규칙	18
제1조: 규칙의 적용 범위	18
중재의 개시.....	19
제2조: 중재통지	19
제3조: 답변 및 반대신청	20
제4조: 관리 회의	20
제5조: 조정	21
제6조 보전적 긴급 처분.....	21
제7조: 제3자의 중재 참가.....	22
제8조: 병합	23
제9조: 신청, 반대신청, 또는 방어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25
제10조: 통지	25
중재판정부.....	25
제11조: 중재인의 수	25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26
제13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27
제14조: 중재인 기피	28
제15조: 중재인의 교체.....	29
일반 조건	30

제16조: 당사자 대리	30
제17조: 중재지	30
제18조: 중재언어	30
제19조: 중재관할권	30
제20조: 절차의 진행	31
제21조: 정보교환	32
제22조: 특권	34
제23조: 심리	34
제24조: 임시처분	35
제25조: 중재판정부 선정 전문가	35
제26조: 의무의 해태	36
제27조: 심리의 종결	36
제28조: 포기	37
제29조: 판정, 명령, 판단, 및 결정	37
제30조: 판정의 기한, 형식 및 효력	37
제31조: 준거법 및 구제 방법	38
제32조: 화해 또는 기타 종료 사유	39
제33조: 판정의 해석 및 정정	39
제34조: 중재비용	40
제35조: 중재판정부의 보수 및 경비	40
제36조: 예치금	41
제37조: 비밀유지	41
제38조: 책임 배제	42

제39조: 규칙의 해석	42
국제신속절차	43
제E-1조: 신속절차의 적용 범위	43
제E-2조: 상세한 주장 제출	43
제E-3조: 관리 회의	43
제E-4조: 신속절차 적용에 대한 이의	43
제E-5조: 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변경	43
제E-6조: 중재인의 선정 및 자격	44
제E-7조: 절차회의 및 명령	44
제E-8조: 서면에 의한 절차	44
제E-9조: 구두심리가 수반된 절차	44
제E-10조: 판정	45
관리요금	46
관리요금 요율표 (표준 및 변동 요금)	46

국제분쟁해결절차 (조정 및 중재규칙 포함)

서설

이 절차는 분쟁당사자, 그 대리인, 중재인 및 조정인에게 완전한 분쟁해결 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 절차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분쟁해결 절차를 합의할 수 있는 자율성과 조정인 및 중재인의 효율적인 절차 운영권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이하 “ICDR”)는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AAA”)의 국제 담당 부서이다. ICDR 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세계 각지에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며, ICDR 의 중재 및 조정은 당사자들이 정한 어떠한 언어로도 진행될 수 있다. ICDR 절차는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공정한 절차진행을 위한 최상의 국제관행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조정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화해로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은 중재와는 독립적으로 또는 중재 일정과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다. 조정의 경우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정인이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판정을 내릴 권한은 갖지 않는다. 이하의 조정규칙(Mediation Rules)은 조정의 틀을 제공한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분쟁 전 조정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이 계약 또는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신청을 중재, 소송 또는 기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에 앞서, ICDR 의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으로 먼저 분쟁 해결을 시도할 것을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다음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조정의 장소는 [국가, (도 또는 주), 도시]로 한다; 및
- b. 조정언어(들)는 _____로 한다.

한편, 당사자들이 조정을 활용하여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정회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하기 분쟁을 ICDR의 국제조정규칙에 따라 ICDR이 관리하는 조정에 회부한다. (이 조항에는 조정인의 자격, 조정의 장소 및 기타 모든 관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국제중재

분쟁은 그에 대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단을 위하여 중재판정부에게 회부될 수 있다. ICDR 중재에서 각 당사자는 이 규칙과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신의 사건을 주장할 기회를 제공 받는다.

당사자들은 계약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여 장래의 분쟁을 중재로 회부할 수 있다.

이 계약 또는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신청은 ICDR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ICDR이 관리하는 중재로 해결한다.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a. 중재인의 수는 (1인 또는 3인)으로 한다;
- b. 중재지는 [국가, (도 또는 주), 도시]로 한다; 그리고
- c. 중재언어는 _____로 한다.

조항작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가이드가 필요한 경우, www.icdr.org의 조항작성 페이지의 **ICDR 국제분쟁해결조항 작성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분쟁해결 조항 또는 합의를 작성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유용한 옵션에 대해 ICDR과 의논할 수

있다. *ICDR* 에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공된 연락처를 참고하기 바란다.

국제신속절차

신속절차는 중재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신속하고 간소화된 중재절차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한다.

신속절차는 이자와 중재비용을 제외하고 신청 또는 반대신청이 미화 250,000달러 이하인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어떠한 신청 규모의 사건에도 동 신속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분쟁금액에 관계 없이 신속절차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계약 또는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신청은 ICDR 의 국제신속절차에 따라 ICDR 이 관리하는 중재로 해결한다.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a. 중재지는 [국가, (도 또는 주), 도시]로 한다; 그리고
- b. 중재언어는 _____로 한다.

국제신속절차의 특징:

- 당사자들은 모든 규모의 사건에 신속절차를 적용하기로 선택 가능;
- 포괄적인 접수 요건;
-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신속한 중재인 선정절차;
-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험이 풍부한 중재인 명부에서의 중재인 선정;
- 당사자들 및 대리인의 참석을 요하는 중재인과의 조기 준비 전화회의;

- 미화 100,000 달러 이하의 사건은 오직 문서에만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
- 신속한 일정 및 (구술심리가 예정된 경우) 제한된 구술심리 기일; 그리고
- 심리종결일로부터 또는 당사자들의 최종 서면 및 증거 제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내려지는 중재판정.

국제조정규칙 또는 국제중재규칙에서 “당사자”, “신청인”또는 “중재인”과 같이 단수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용어는 하나 이상의 그러한 개체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를 포함한다.

동 규칙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 영문본이 공식 문서이다.

ICDR에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

ICDR 또는 AAA 에 사건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들은 www.icdr.org 의 AAASWebFile®(사건 접수 및 관리)를 통하여 온라인, 우편 또는 팩시밀리(팩스)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접수에 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들은 모든 ICDR 또는 AAA 사무소를 통해 ICDR 에 직접 연락하면 된다.

우편: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Case Filing Services

1101 Laurel Oak Road, Suite 100

Voorhees, NJ, 08043

United States

AAASWebFile: www.icdr.org

이메일: casefiling@adr.org

전화: +1-856-435-6401

팩스: +1-212-484-4178

미국 및 캐나다 내 수신자요금부담 전화: +1-877-495-4185

미국 및 캐나다 내 수신자요금부담 팩스: +1-877-304-8457

이 규칙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ICDR 웹사이트 www.icdr.org 를 방문하거나 +1.212-484-4181 로 연락하기 바란다.

국제조정규칙

1. 당사자들 간의 합의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 국제조정규칙에 의해 분쟁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거나, 특정 규칙을 지정하지 않고 기존 또는 장래의 국제분쟁을 AAA의 국제부서인 ICDR 또는 AAA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화해로 해결하기로 규정한 경우, 분쟁이 회부된 날짜를 기준으로 개정되고 발효된 이 규칙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구성한다고 본다.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 하에 이 규칙의 어느 부분이든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당사자들은 조정을 전화 또는 기타 전자적 또는 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조정의 개시

1. 분쟁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전화, 이메일, 일반우편 또는 팩스로 ICDR 또는 AAA 산하의 여하한 사무소 또는 사건관리센터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ICDR의 주관 하에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조정신청은 www.icdr.org의 AAA WebFile을 통해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2. 조정신청 당사자는 위 신청과 동시에 상대방 또는 상대방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신청 당사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정보를 ICDR과 상대방 또는 상대방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a. 조정조항이 포함된 당사자들의 계약 또는 당사자들의 조정약정 합의의 사본;
 - b. 모든 분쟁당사자의 성명, 일반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조정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 대한 상기 정보;
 - c. 분쟁의 성질 및 신청하는 구제에 관한 간략한 진술;
 - d. 조정인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자격.
3. 당사자들이 기존 또는 장래의 분쟁을 ICDR의 주관 하에 조정하기로 정하는 기존의 약정 또는 계약이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ICDR로 하여금 상대

당사자들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조정”에 참여하도록 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ICDR 은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즉시 분쟁에 관여된 상대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연락하여 조정 회부에 관한 수락을 받는 것을 시도한다.

3. 대리

당사자는 적용되는 법에 따라 자신을 대리할 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자들의 성명 및 주소는 상대 당사자들과 ICDR 에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4. 조정인의 선정

당사자들이 조정인의 선정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고 기타 선정 방식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조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 a. 조정 신청서 수령 후, ICDR 은 ICDR ‘조정인 명부’에서 조정인 후보명단을 각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당사자들은 제출된 후보명단에서 1 인의 조정인 선정에 합의하게 되면, 그 합의 내용을 ICDR 에게 알려야 한다.
- b. 만일 당사자들이 1 인의 조정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수락할 수 없는 후보자를 명단에서 제외하고, 남은 후보자를 선호도 순으로 순위를 매겨 이를 ICDR 에 반환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위 후보자 명단을 반환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명단에 올라간 모든 조정인을 수락하는 것으로 본다. ICDR 은 당사자들이 상호 승인한 조정인들 중, 상호 지명한 선호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조정인에게 업무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 c. 당사자들이 명단에 있는 어떤 조정인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거나, 수락 가능한 조정인들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제출된 명단에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ICDR 은 추가 명단의 제출 없이 조정인 명부 중 다른 후보자 중에서 조정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5. 조정인의 공정성 및 고지의무

1. ICDR 조정인은 조정 사건에 조정인으로 선정될 당시 시행중인 ‘조정인 표준 행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준 행동기준이 동 조정규칙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 동 조정규칙이 우선한다. 표준 행동기준에 의하면 조정인은 (i) 공정한 방식으로 조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조정을 거절하고, (ii) 조정인이 합리적으로 알고 있고 조정인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실제 및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2. 선정 수락에 앞서 ICDR 조정인은 합리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ICDR 조정인은 일방 당사자에 대해 편견이 있다는 의심을 유발하거나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기한 이내에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을 고지하여야 한다. ICDR은 이러한 고지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3. 당사자들은 조정인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대한 고지사항을 수령 후 이해충돌을 다룰 권리를 포기하고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가 조정인의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조정인의 이해충돌이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조정의 완전성을 훼손시킨다고 보일 경우, 조정인은 교체되어야 한다.

6. 공석

조정인이 업무 수행을 원하지 않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ICDR은 제4조에 따라 다른 조정인을 선정한다.

7. 조정인의 임무와 책임

1. 조정인은 당사자 자기결정 원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자기결정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에 대하여 자유롭고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하는 자발적이고 강요 당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2. 조정인은 예정된 조정회의 이전, 도중 또는 이후에 당사자 및/또는 대리인과 별도로 또는 당사자 일방과 회의를 하거나 기타 교신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교신은 전화, 서면, 이메일, 온라인, 대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신청된 구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교환하도록 권장 받는다. 조정인은 다툼이 되는 기본적인 이해관계 및 당사자들의 그간 협상 과정을 포함한 쟁점에 대해 기술한 서면을 서로 교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비밀유지를 희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 시 조정인과의 별도 교신을 통해 조정인에게 송부할 수 있다.
4. 조정인은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분쟁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조정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비공개로,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모든 당사자들 앞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5. 예정된 조정회의 일정 내에 모든 또는 일부 쟁점에 대한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인은 완전한 화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자들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논의할 수 있다.
6. 조정인은 어느 당사자의 법적 대리인도 아니며 어느 당사자에게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충실의무를 지지 않는다.

8. 당사자의 책임

1. 당사자는 화해를 성사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적정한 대리인이 조정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과 그 대리인들은 예정된 조정회의 이전 및 도중, 각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의미 있고 생산적인 조정을 준비하고 참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9. 비공개

조정회의 및 관련된 조정에서의 의사교환은 비공개 절차이다. 당사자 및 대리인은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당사자들의 허가 및 조정인의 동의 하에서만 참석할 수 있다.

10. 비밀유지

1. 적용되는 법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인은 당사자들 또는 기타 참가자(증인)가 고지한 비밀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조정인은 조정을 통해 입수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정인 역할 수행을 통해 입수한 모든 기록,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정인은 대립적 심문절차 또는 사법당국에 상기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조정에 관해 증언하도록 강요 받을 수 없다.
3. 당사자들은 조정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적용되는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중재, 사법 또는 기타 절차에서 다음 사항에 의존하거나 이를 증거로 제시할 수 없다:
 - a. 당사자 또는 기타 참가자가 분쟁의 화해를 위해 표명한 견해 또는 제안들;
 - b. 조정절차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기타 참가자가 인정한 사항;
 - c. 조정인에 의한 제안 또는 표명된 견해; 또는
 - d. 조정인이 제시한 제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할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11. 속기기록 금지

조정 절차에 대한 속기기록은 만들지 않는다.

12. 조정의 종료

조정은 다음의 경우 종료된다:

- a. 당사자들에 의한 화해계약 체결; 또는
- b. 추가 조정 노력이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조정인의 서면 또는 구두 선언; 또는
- c. 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모든 당사자들의 서면 또는 구두 선언; 또는
- d. 조정회의 종료 이후 21 일 동안 조정인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간 교신이 없을 경우

13. 책임 배제

ICDR과 조정인은 조정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서 필요적 당사자가 아니다. ICDR과 조정인은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조정과 관련된 오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 규칙의 해석 및 적용

조정인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관련되는 한도에서 이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기타 다른 모든 규칙은 ICDR이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15. 예치금

조정인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ICDR은 당사자들에게 조정회의에 앞서 조정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비용과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산정한 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며, 당사자들에게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조정 종료 시에 미사용 금액을 반환한다.

16. 경비

여비 및 기타 경비 또는 조정인 보수를 포함한 모든 조정 경비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자 균등하게 부담한다. 일방 당사자를 위해 참석한 참가자 경비는 참석을 요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17. 조정비용

1. 조정을 개시하기 위한 신청요금이나 상대 당사자들에게 조정에 응할 것을 ICDR 에 요청하기 위한 별도의 요금은 없다.
2. 조정비용은 조정인의 ICDR 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당 조정 보수요율에 따른다. 이 보수요율은 조정인 보수와 ICDR 서비스를 위한 할당 부분을 총당한다. 조정회의는 최소 4 시간의 부담금을 적용한다. 제 16 조에 기재된 경비 또한 적용될 수 있다.
3. 조정 신청이 이루어진 사건이 철회 또는 취소되거나, 조정에 회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접수된 후 조정회의 이전에 화해에 이를 경우, 비용은 미화 250 달러에 조정인의 소요 시간에 따른 보수를 더한 금액이다.
4.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비용은 당사자들에게 균등하게 청구된다.

조정비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웹사이트 www.icdr.org을 방문하거나 +1-212-484-4181로 연락하기 바란다.

18. 조정언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언어는 조정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언어로 한다.

회의실 대여

위 기술한 비용은 ICDR 회의실 사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회의실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의실 사용 가능 여부와 요율에 관해서는 해당 지역 ICDR 사무실에 문의하길 바란다.

국제중재규칙

제1조: 규칙의 적용 범위

1. 당사자가 이 국제중재규칙(이하 “규칙”)에 의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특정 규칙을 선정하지 않고 ICDR 또는 AAA를 통해 국제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규정한 경우, 중재는 중재 개시일 당시 시행중인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해 본 규칙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이 우선한다. ICDR은 이 규칙의 ‘관리자’이다.
2. 중재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되, 규칙의 어떤 규정이 당해 중재에 적용되는 법규정 중 당사자가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행규정이 우선한다.
3.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하거나 규칙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ICDR 또는 AAA에 의한 국제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규정한 경우, 당사자들은 이로써 ICDR에게 중재절차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 규칙은 AAA의 산하기관인 ICDR의 중재절차의 관리자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명시한다. 관리자는 ICDR의 사건 관리 사무소나 AAA 시설 또는 ICDR이나 AAA가 협력약정을 체결한 다른 중재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오직 ICDR 또는 ICDR에서 권한을 부여한 개인 또는 기관만이 이 규칙에 따른 중재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관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자 및 중재비용을 제외한 신청 또는 반대신청 금액이 미화 2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신속절차가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국제신속절차 적용에 합의할 수 있다. 국제신속절차에는 이 규칙 제E-1조부터 제E-10조 및 신속절차와 저촉되지 않는 규칙의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이자,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중재비용을 제외한 신청 또는 반대신청 금액이 미화 1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이

구두심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은 서면 심리에 의해서만 해결된다.

중재의 개시

제2조: 중재통지

1. 중재를 개시하는 당사자(이하 “신청인”)는 제10조에 의하여 관리자와 신청의 상대방인 당사자(이하 “피신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중재통지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관리자의 홈페이지 www.icdr.org에 있는 온라인 접수체계를 통해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
2. 중재는 관리자가 중재통지서를 접수하는 일자에 개시된 것으로 본다.
3. 중재통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분쟁을 중재로 회부하는 신청;
 - b. 각 당사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와 이메일 주소. 또한, 알고 있는 경우 각 당사자의 대리인에 관한 동일한 정보;
 - c. 원용하는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 전체에 관한 사본. 만약 신청이 복수의 중재합의를 근거로 할 경우, 각 신청이 원용하는 중재합의 사본;
 - d.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계약에 관한 언급;
 - e. 신청에 대한 설명 및 근거 사실;
 - f. 신청취지 및 신청금액; 및
 - g. 선택적으로, 중재인 선정방법, 중재인의 수, 중재지, 중재 언어 및 분쟁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지에 대한 당사자들 간 사전 합의에 따른 제안들
4. 중재통지서에는 적정한 신청요금이 수반되어야 한다.

5. 관리자는 중재통지서 수령 후 곧바로 중재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중재개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조: 답변 및 반대신청

1. 피신청인은 중재개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기타 당사자 및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중재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시 중재합의에 기초하는 반대신청을 제기하거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신청인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 기타 당사자 및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반대신청 또는 상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반대신청 및 상계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재통지서에 요구되는 동일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적정한 신청요금이 수반된다.
4. 피신청인은 중재개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기타 당사자 및 관리자에게 사전에 합의가 없었던 신청인 제안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거나, 중재인 선정방법, 중재인의 수, 중재지, 중재 언어 또는 분쟁의 조정에 대해 당사자간 사전 합의 내용에 따른 피신청인 자신의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5.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판정부 구성 전의 경우 관리자는, 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6. 피신청인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중재절차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7. 다수당사자가 관여된 중재의 경우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다른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을 하거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한 다른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을 하거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회의

관리자는 중재인 선정, 분쟁 조정, 절차의 효율화 및 기타 관리사항들에 대한

당사자간 논의 및 합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관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조정

답변서 제출 이후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ICDR 국제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ICDR 국제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에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은 중재와 병행해서 진행되며, 당해 사건의 중재인은 조정인으로 선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보전적 긴급 처분

1.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관리자 및 다른 당사자 모두에게 서면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긴급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서면 통지에는 구하는 구제의 성질,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근거 및 이와 같은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의 권리 근거가 개진되어야 한다. 통지서는 중재통지서의 제출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지서는 이메일 또는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진술 또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관리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제1영업일 이내에 1인의 긴급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 후보자는 선정을 수락하기에 앞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제13조에 따라 관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기피 신청은 관리자가 당사자들에게 긴급중재인 선정 및 공개된 상황을 전달한 날로부터 제1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긴급중재인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선정된 날로부터 제2영업일 이내에 긴급구제 신청에 대한 검토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검토일정에는 모든 당사자에게 변론할 기회를 합리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대면 심리를 대체하는 전화, 비디오, 서면 심리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긴급중재인은 자신의 관할을 결정할 권한을 포함하여 제19조에 따라 중재판정부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유하며, 동 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여하한 분쟁을 해결한다.

4. 긴급중재인은 재산의 보호 또는 보전을 위한 금지명령 및 처분을 포함하여 긴급중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임시적 또는 보전적 처분을 명하거나 판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은 처분은 임시판정 또는 명령의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어느 경우든지 긴급중재인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은 임시판정 또는 명령을 수정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모든 임시판정 또는 명령은 제24조에 따라 내려진 임시 처분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내려진 때에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이와 같은 임시판정 또는 명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5.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내린 긴급구제에 대한 임시판정 또는 명령을 재고, 수정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6. 긴급구제에 대한 모든 임시판정 또는 명령은 해당 구제를 구하는 당사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7. 일방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임시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6조 또는 중재합의와 양립 불가능하다거나 중재를 할 권리의 포기로 보지 아니한다.
8. 긴급중재인은 임시처분 신청과 관련된 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중재판정부가 해당 비용분담의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다.

제7조: 제3자의 중재 참가

1. 제3자를 중재에 참가시키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추가당사자에 대한 중재통지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추가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이 한 명이라도 선정된 후에는 당사자를 추가로 참가시킬 수 없다. 제3자를 중재에 참가시키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와 동시에 중재통지서를 추가당사자 및 다른 당사자들 모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는 해당 중재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추가당사자에 대한 중재의 개시일로 본다. 참가에는 제12조 및 제19조가 적용된다.

2.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재통지서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한 신청요금이 함께 납부되어야 한다.
3. 추가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추가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해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제8조: 병합

1. 관리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 병합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병합중재인은 이 규칙, 또는 AAA나 ICDR이 관리하는 이 규칙과 다른 중재 규칙에 따라, 계속 중인 두 건 이상의 중재를 하나의 중재로 병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a.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병합에 합의한 경우; 또는
 - b. 복수의 중재에 제기된 모든 신청과 반대신청이 동일한 중재합의에 근거하는 경우; 또는
 - c. 복수의 중재에서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가 복수의 중재합의에 근거하는 경우; 복수의 중재에 동일 당사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복수의 중재에서 분쟁들이 동일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그리고 병합중재인이 복수의 중재합의가 서로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병합중재인은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 a.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병합중재인 선정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병합중재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합의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 b. 상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병합중재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자가 병합중재인을 선정한다.

- c.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한, 이 조항에 의해 병합대상인 진행 중인 중재에서 선정된 중재인은 병합중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d. 병합중재인의 선정에는 이 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가 적용된다.
3. 병합중재인은 병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들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중재판정부와도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 a. 준거법;
 - b. 단독 또는 다수 중재인이 복수의 중재에서 선정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동일한 또는 다른 중재인이 선정되었는지 여부;
 - c. 중재에서 이미 진행된 사항;
 - d. 복수의 중재에서 공통된 법 및/또는 사실에 관한 쟁점이 발생되는지 여부; 및
 - e. 중재의 병합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지 여부.
4. 병합중재인은 병합될 가능성이 있는 개별 또는 모든 중재에 대해, 병합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5. 복수의 중재가 병합되는 경우,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병합중재인이 달리 판단하지 않는 한, 먼저 개시된 중재로 병합된다.
6. 병합중재인이 복수의 중재를 하나의 중재로 병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중재의 각 당사자는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병합중재인은 기존 중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중재판정부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병합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관리자는 필요할 경우 병합절차의 중재판정부 선정을 완료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병합중재인은 병합된 절차에 중재인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7. 병합에 관한 결정은 이유에 관한 기재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병합에 대한 최종 서면 제출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제9조: 신청, 반대신청, 또는 방어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어느 당사자든 자신의 신청, 반대신청, 상계, 또는 방어를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수정 또는 보완을 지체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또는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수정 또는 보완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수정 또는 보완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다. 중재판정부는 비용에 대한 판정 및/또는 관리자가 결정한 신청요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수정 또는 보완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모든 통지와 서면 교신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의 우편, 특사송달, 팩스 또는 기타 서면 양식의 전자 교신 또는 직접 전달 등 송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2. 이 규칙에 따라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지한 날의 다음 날을 기간의 기산점으로 한다. 그러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수령지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이후 최초로 도달하는 영업일에 만료한다. 기간 중의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한다.

중재판정부

제11조: 중재인의 수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인의 수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단독 중재인이 선정된다. 단, 관리자가 그 재량으로 분쟁의 규모, 복잡성 또는 사건 관련 기타 사정들을 고려하여 3인의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1. 당사자들은 중재인 선정 절차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합의된 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선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관리자는 제12조 제6항에 따라 ICDR 중재인명부 선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관리자의 지원을 받아, 또는 지원 없이 중재인을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중재인 선택시 당사자들은 중재인들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택된 중재인들에게는 ‘선정통지서’가 이 규칙의 사본과 함께 전달된다.
3. 중재개시 후 45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절차나 중재인 선택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는 일방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간 중재인 선정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된 절차에 따른 기한 내에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일방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절차에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모든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협의를 요청한 후 중재인들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적합한 중재인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각 당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5. 중재의 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개시 이후 45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리자는 모든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6.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선정방식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재량으로 ICDR 중재인명부 방식을 사용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중재인으로 고려된 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동일한 명단을 각 당사자에게 동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제출된 명단에서 중재인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권장 받으며 그 합의 내용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명단 수령 후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명단 송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하는 성명은 명단에서 제외하고, 남은 성명을 선호도 순으로 순위를 매겨 관리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선택 명단을 서로 교환할 필요가 없다. 어떤 당사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그 명단을 반환하지 않으면 명단의 모든 자들에 대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관리자는 당사자들의 명단에서 승인된 자들 중 공통으로 높은 선호 순서에 따라 중재인에게 업무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명단에 있는 어떤 자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용 가능한 중재인들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일정상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제출된 명단에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는 추가 명단의 제출 없이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중재판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장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7. 중재인 선정의 효력은 중재인이 완성하고 서명한 선정통지서를 관리자가 수령한 때에 발생한다.

제13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1. 이 규칙에 따르는 중재인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제공한 선정통지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선정 수락 시 중재인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관리자가 제공한 선정통지서에 서명해야 한다.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모든 사유 및 당사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기타 관련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중재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재인 또는 당사자는 이를 모든 당사자 및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중재인 또는 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면 이를 모든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재인 또는 당사자의 고지 자체로 반드시 해당 중재인 또는 당사자가 고지된 정보로 인해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한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당사자가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유를 알게 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해당 사유에 기초하여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6. 당사자 또는 당사자 대리인은 중재인 또는 당사자 지명 중재인 후보자와 중재사건에 관한 일방적 의사연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후보자에게 분쟁의 일반적인 성격 및 예상되는 절차에 대한 자문과 후보자의 자격,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또는 당사자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논의하거나,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의장중재인 선택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후보자가 의장중재인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 대리인은 의장중재인 후보자와 중재사건에 관하여 일방적 의사연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중재인 기피

1.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라도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인 선정 사실을 통지 받은 날 또는 해당 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은 기피의 근거를 서면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해당 기피신청을 중재판정부의 어느 구성원에게도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
2. 기피신청 접수 시 관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피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기피신청 통지를 중재판정부 구성원에게 발송할 수 없으나, 중재판정부에게 기피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되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를 밝히지 않아야 한다. 관리자는 기피신청 대상 중재인에게 기피신청 사실을 알리고 기피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기피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가 있을 경우 중재인은 사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기피 대상인 중재인은 관리자와 협의한 후 자진 사임할 수 있다. 단, 위 각 경우에 사임하였다고 하여 기피 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피 대상인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단독재량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중재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직권으로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인의 교체

1.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떠한 사유로 해임되어 공석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12조 규정에 따라 대체 중재인이 선정된다.
2. 이 조항에 따라 대체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단독재량에 따라 중재절차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복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3인 중재판정부 중 중재인 1인이 제1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두 중재인은 단독재량에 따라 세 번째 중재인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계속 진행하고 판단, 결정, 명령 또는 판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중재인 1인 없이 중재를 계속 진행하거나 판단, 결정, 명령 또는 판정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나머지 두 중재인은 중재진행 단계, 세 번째 중재인이 밝힌 불참 원인 및 사건 정황상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머지 두 중재인이 세 번째 중재인의 참여 없이 중재진행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증거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자는 세 번째 중재인의 공석을 선언하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12조 규정에 따라 대체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 조건

제16조: 당사자 대리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상대방 당사자 및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관리자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부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중재판정부와 직접 서면으로 교신할 수 있으며, 이때 상대방 당사자 및 관리자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관리자에게 그 사본을 동시에 전달 할 수 있다. 당사자 대리인은 ICDR이 발간하는 대리인의 행동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중재지

1. 당사자들이 관리자가 지정한 날짜까지 중재지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 45일 이내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으로 중재지를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중재지를 우선 결정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심리, 회의, 증인 심문, 재산 및 문서 조사 또는 중재인들 간 심의 진행을 포함하여 어떤 목적으로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 회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지와 다른 곳에서 회합할 경우, 중재와 판정은 중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중재언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언어는 중재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언어로 한다. 단, 중재판정부는 이와 달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중재판정부는 다른 언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 중재언어로 번역한 문서를 첨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9조: 중재관할권

1.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범위, 유효성에 관한 이의제기를 포함한 자신의 관할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중재에서 제기된 모든 신청,

반대신청 및 상계가 단일 중재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의 존재 여부나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은 중재조항은 그 계약의 다른 조항들과는 독립된 합의로 취급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을 무효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중재조항까지 무효로 되지 않는다.
3.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 또는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중재관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의 이유가 되는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조에 따른 이의 제기를 선결문제 또는 중국판정문의 일부로 결정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제기된 중재관할에 관한 이의는 관리자가 사건 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중재판정부에게 회부되어 결정되어진다.

제20조: 절차의 진행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부여하며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한, 이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하한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구성된 후 신속하게 중재 절차를 준비, 편성 및 합의할 목적으로 준비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여기에는 당사자들의 각종 서면 제출기한을 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와 모든 당사자는 사건의 절차를 확립함에 있어서 전자적 의사교환을 비롯한 기술의 활용이 어떻게 절차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고려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선결쟁점을 결정하고 절차를 분리할 수 있으며 입증 순서를 지시할 수 있고 누적되거나 관련 없는 진술 또는 기타 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절차 중 언제라도 당사자들에게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서, 서증 또는 기타 다른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21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5.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게 제출한 문서 또는 정보는 해당 당사자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동시에 송부되어야 하며 관리자가 달리 지침을 내리지 않는 한, 관리자에게도 송부되어야 한다.
6.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허용가능성, 관련성, 중요성 및 그 증명력을 결정해야 한다.
7. 당사자들은 중재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효율성과 완전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추론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정보교환

1. 중재판정부는 효율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당사자 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은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방지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각 당사자가 자신의 신청과 방어를 공평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은 각 사건에 대한 정보 교환의 적절한 정도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최종 권한은

중재판정부가 갖는다. 당사자들이 이 조항과 달리 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서면 합의 및 중재판정부와의 협의에 의해야 한다.

3.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각자가 의존하고자 하는 모든 문서를 교환하여야 한다.
4. 중재판정부는 신청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의 지배 하에 있고 다른 당사자가 보유하지 않은 문서에 대해, 그 문서가 존재하며, 사건결과와 관련이 있으며 중요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문서제출 요청에는 문서의 특정 또는 문서의 종류에 관한 서술과 함께 문서가 갖는 사건 결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중재판정부는 상업적 또는 기술적 기밀성을 갖는 정보의 교환 신청에 대해 그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6. 교환될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자신에게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식(예를 들어, 종이 사본)으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중재판정부가 신청에 의하여 다른 방식으로 문서에 접근해야 할 납득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적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요청은 문서를 최대한 경제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좁게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검사 또는 검색을 집중하고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명할 수 있다.
7. 중재판정부는 신청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통지에 따라 관련된 장소 또는 물건에 관한 검사를 허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중재판정부는 심리 전 정보 교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때 신청 당사자에게 당해 신청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과 경비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보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와 같은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임시명령 또는 관정을 통해 당사자들 간 정보 제공의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9. 일방 당사자가 정보 교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하여 불리한 결론을 추론할 수 있으며 비용 분담에 이와 같은 불이행을 고려할 수 있다.
10. 미국 법원 절차에서 사용되는 법정 외 증인신문, 서면신문 및 자인요구는 일반적으로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로서 적절하지 않다.

제22조: 특권

중재판정부는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교신에 대한 비밀유지 등과 같은 특권에 대한 적용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들, 대리인 또는 문서에 대해 적용되는 법에서 서로 상이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최고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는 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가능한 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23조: 심리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모든 구두심리의 일시, 장소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각 당사자는 심리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중재판정부와 다른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증인의 성명과 주소, 진술의 취지 및 증인이 증언할 언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심문방식과 증인 심문시 참석할 자를 결정한다.
4. 증인의 증거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증인이 서명한 서면진술서의 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중재판정부와 다른 당사자들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증인 중 심문을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어떠한 증인이라도 심리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해 증인의 서면진술서를 무시할 수 있다.

5.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물리적인 참석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인을 심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6. 심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이 상이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한다.

제24조: 임시처분

1.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산의 보호 또는 보전을 위한 금지명령 및 처분 등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임시적 또는 보전적 처분을 명하거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이와 같은 임시처분은 임시명령 또는 판정의 형식으로 내릴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비용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3. 일방 당사자가 사법 당국에 신청한 임시처분은 중재합의와 양립 불가능하다거나 중재를 할 권리의 포기로 보지 아니한다.
4.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임시구제 신청에 관한 비용을 임시명령 또는 판정, 또는 종국판정에서 부담시킬 수 있다.
5.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의 긴급구제신청은 제6조에 따라 제기될 수 있다.

제25조: 중재판정부 선정 전문가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의 협의 후 1인 또는 수인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선정하여, 중재판정부가 지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쟁점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해당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전문가가 필요로

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전문가 간에 요청된 정보 또는 물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3. 전문가 보고서를 송부 받은 후 중재판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보고서 사본을 발송하고 당사자들에게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모든 문서를 검토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기일에서 당사자들이 전문가를 심문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심리에서 당사자들은 쟁점이 되는 사항에 관해 증언할 전문가 증인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의무의 해태

1. 당사자가 제3조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2.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고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증거제출 또는 기타 진행절차를 밟도록 적법하게 요청 받았음에도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27조: 심리의 종결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인지 문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받거나 기록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 심리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에는 언제든지 재량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제28조: 포기

이 규칙의 규정 또는 요건, 또는 중재합의의 불이행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를 계속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

제29조: 판정, 명령, 판단, 및 결정

1. 중재판정부는 중국판정뿐만 아니라 잠정, 중간 또는 일부 판정, 명령, 판단 및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중재인이 다수일 경우 모든 판정, 명령, 판단, 또는 결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3. 당사자들 또는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장중재인은 정보교환을 포함한 절차 문제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명령, 판단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30조: 판정의 기한, 형식 및 효력

1. 판정은 중재판정부가 서면으로 작성하며, 이는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중재판정부는 심리 종결 후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 및 판정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합의, 법령의 규정 또는 관리자의 결정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중국판정은 심리 종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당사자들은 판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권한의 포기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고 달리 합의가 없는 이상 여하한 법원 또는 기타 사법당국에 대해 항소, 심리 또는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유효하게 포기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판정이유 기재가 불필요하다고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판정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판정에는 중재인의 서명, 판정일자 및 제17조에 따른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수의 중재인이 있고 이 중 서명하지 못하는 중재인이 있을 경우,

판정은 서명이 없는 이유의 기재를 포함 또는 수반하여야 한다.

3. 판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거나 법령상 요구된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다. 단, 관리자는 집행 또는 기타 과정에서 공개된 판정, 명령, 판단, 및 결정을 선정하여 발간 또는 공개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당사자들의 성명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편집한 판정, 명령, 판단, 및 결정을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을 초안의 형태로 관리자에게 송부한다. 판정문은 관리자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통지된다.
5. 준거법상 판정문의 접수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당 요건 또는 기타 중재지의 절차적 요구사항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당사자들의 책임이다.

제31조: 준거법 및 구제 방법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분쟁에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한 실체법 또는 법규범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간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실체법 또는 법규범을 적용해야 한다.
2. 계약의 적용과 관련한 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계약 조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에 적용되는 거래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선의의 중재인으로서 또는 형평과 선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4. 금전의 배상에 관한 판정에서 통화는 중재판정부가 다른 통화가 더 적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계약상 통화로 해야 하며, 중재판정부는 계약 및 준거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정 전 및 판정 후 단리 또는 복리 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5.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징벌적, 처벌적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기권 및 포기한다. 다만, 준거법상 특정한 방식에 따라 보상적 손해배상의 증액이 요구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의 중재절차상 위법행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중재비용 판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2조: 화해 또는 기타 종료 사유

1. 중재판정 이전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종료하여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신청할 경우 화해내용을 합의 내용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의 형태로 기재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와 같은 판정에 대해 이유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2. 중재의 계속이 불필요해지거나 또는 관리자가 요구한 예납금의 미납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중재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중지 또는 종료될 수 있다.
3. 이 조항의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중재의 계속이 불필요해지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후 당사자가 정당한 이의사유를 제기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종료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33조: 판정의 해석 및 정정

1. 판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중재판정부에게 판정의 해석을 요청하거나, 오기, 오타, 또는 오산 등의 오류 정정을 요청하거나, 주장되었으나 판정문에서 누락된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에 대한 추가판정을 내릴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후 이러한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최종 서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석, 정정 또는 추가판정에 관한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모든 해석, 정정 또는 추가판정은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중재판정부는 판정 후 30일 내에 직권으로 오기, 오타 또는 오산 등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고, 주장되었으나 판정문에 누락된 신청에 대한 추가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해석, 정정 또는 추가판정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며,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제34조: 중재비용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비용을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분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들간 중재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비용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 a. 중재인 보수 및 경비;
- b. 전문가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부의 필요에 따라 지출한 지원 비용;
- c. 관리자 수당 및 경비;
- d. 당사자들이 부담한 합리적인 법률 및 기타 비용;
- e. 제6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시 또는 긴급처분 통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
- f. 제8조에 따른 병합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 g. 제21조에 따른 정보교환과 관련된 모든 비용

제35조: 중재판정부의 보수 및 경비

1. 중재인 보수 및 경비는 중재인이 들인 시간,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 및 기타 관련사항을 고려한 합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2. 관리자는 중재개시 이후 실현 가능한 대로 최대한 신속히 중재인의 명시된 보수요율 및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해서 당사자들 및 모든 중재인과

협의를 통해 적정한 일일 또는 시간당 보수요율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중재인 보수 및 경비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관리자에 의해 결정된다.

제36조: 예치금

1.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제34조 상의 비용에 대해 적정한 예납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중재절차 진행 중에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추가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다.
3. 요구된 예치금이 신속히 전부 납입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하나 또는 다수의 당사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중지 또는 종료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관리자가 절차를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4.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요구된 예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철회로 본다.
5. 종국판정 이후 관리자는 수령한 예치금의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미사용 금액을 당사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7조: 비밀유지

1. 중재인 또는 관리자는 중재 기간 동안 당사자 또는 증인이 공개한 비밀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또는 준거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제3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 구성원 및 관리자는 중재 또는 판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 또는 중재에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영업비밀 및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 책임 배제

중재판정부 구성원,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긴급중재인,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병합중재인 및 관리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중재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책임 제한이 금지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들은 중재인, 긴급중재인, 병합중재인 및 관리자가 중재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합의하며, 어떠한 당사자도 이들을 중재와 관련된 어떠한 사법 또는 기타 절차에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제39조: 규칙의 해석

중재판정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긴급중재인 및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병합중재인은 자신의 권한과 의무에 관련되는 한도에서 이 규칙을 해석 및 적용한다. 관리자는 모든 기타 규칙을 해석 및 적용한다.

국제신속절차

제E-1조: 신속절차의 적용 범위

이 신속절차는 제1조 제4항에 따라 국제중재규칙을 보완한다.

제E-2조: 상세한 주장 제출

당사자들은 중재통지서 및 답변서에 사실관계, 신청, 반대신청, 상계 및 방어에 대하여 상세한 주장을 제출하고 그와 함께 의존하고자 하는 당시 입수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한다. 중재인은 당사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서면 제출의 완료에 관한 일정표를 포함하는 절차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제E-3조: 관리 회의

관리자는 이 절차의 적용, 중재인 선정, 분쟁 조정 및 기타 다른 행정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당사자들 및 그 대리인들과 관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E-4조: 신속절차 적용에 대한 이의

중재인 선정 이전에 이의가 제기되면 관리자는 중재인이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우선 이 신속절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중재인은 분쟁금액 및 기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E-5조: 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변경

최초 신청 및 반대신청의 접수 이후 당사자가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변경하여 그 액수가 이자 및 중재비용을 제외하고 미화 250,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관리자 또는 중재인이 달리 판단하지 않는 한, 사건은 계속 이 신속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중재인 선정 이후 중재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 외에는 새로운 또는 다른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 및 금액의 변경이 제출될 수 없다.

제E-6조: 중재인의 선정 및 자격

단독 중재인은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관리자는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5인의 중재인 후보 명단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이 명단 중에 있는 중재인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에 대한 명단 송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두 개의 이름을 지운 명단을 관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선택 명단의 교환은 요구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수락 가능한 중재인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일정상 불가능한 경우, 관리자는 추가 명단을 회람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관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과 함께 고지사항을 통지 받는다.

제E-7조: 절차회의 및 명령

중재인은 중재인 선정 이후 당사자들, 당사자들의 대리인 및 관리자와 사건의 절차 및 일정을 논하기 위해 절차 전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중재인은 선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E-8조: 서면에 의한 절차

서면에 기반한 신속절차의 경우, 모든 서면은 중재인이 달리 판단하지 않는 한, 절차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두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E-9조: 구두심리가 수반된 절차

구두심리가 개최되는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인은 심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구두심리는 중재인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한, 절차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심리는 중재인의 재량에 따라 직접 참석, 영상 회의 또는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개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 또는 속기기록은 준비되지 않는다. 속기기록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를 준비할 수 있다. 구두심리는 중재인이 달리 판단하지 않는 한,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심리기일을 사전에 통지한다.

제E-10조: 판정

판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종국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판정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이 달리 규정하거나 관리자가 달리 판단하지 않는 한, 심리종결일 또는 최종 서면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관리요금

관리요금 요율표 (표준 및 변동 요금)

현행 중재관리 비용 체계는 www.icdr.org/feeschedul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 ICDR 및 AAA. 판권 소유. 이 규칙은 ICDR 및 AAA의 저작권이며 ICDR/AAA의 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의 무단 사용 또는 변경은 저작권법 및 기타 준거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12-484-4181 또는 websitemail@adr.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